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3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2003. 7. 28 개정, 환경부예규 제232호) 및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신고포상금지침(2003. 9. 4 환경부폐정67511-94호)이 시달되어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지 못하고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2호)

- 과태료의 처분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30일 이내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
- 집단 급식소 등에서 무상 자판기의 1회용컵·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소규모 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목격할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13조 별지 11호서식)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1인의 신고포상의 지급한도를 월 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신고 포상금을 받는 목적으로 사전 공모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포상금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지 ?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중 매장 면적 33㎡이하의 소규모 유통업을 하는 영세상인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서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 • 쓰레기 봉투와 소규모 슈퍼에서 나누어 주는 검정 비닐봉투의 재질은 같은지 ? 또한 썩는 비닐로 제작해야 할것이 아닌지 ? •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사용 비닐 봉투는 여행이나 휴양지에서도 사용가능한데 이러한 곳에서 무단투기가 되면 소각보다는 매립으로 썩는 비닐봉투 제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하고 있음. • 시, 군,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쓰레기 봉투제작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제작하고 있으며, 소각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썩는비닐 봉투를 제작시 비용 측면에서 과다 비용이 소요됨으로 제작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쓰레기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어 타 시·군 사용을 억제하고 여행이나 휴양지에서는 그 지역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됨.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237
의결 년월일	2004. 3. 19

제안년월일 : 2004. 3. 18.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유지형인 소규모 사업장인 33제곱미터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고,
- 향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된 후 33제곱미터 미만인 영세사업장 등에 확대 시행

2. 주요골자

- 안 제2조 관련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제1호 마목 (4)란을 삭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중 제
1호 마목 (4)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단위: 만원)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단위: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 차 이 후 반 v		부 과 대 상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 차 이 후 반 v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략)							
마. (생략)					마. (제정안과 같음)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3	<삭 제> ^ 삭 제 v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제237호
의결 년월일	2004. 3. 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정이유

-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2003. 7. 28개정, 환경부예규 제232호) 및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침(2003. 9. 4, 환경부폐정67511-94호)이 시달되어,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사용 또는 무상제공하지 못하고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나. 과태료의 처분은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30일 이내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 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 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집단급식소 등에서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소형종이봉투 무상 제공, 소규모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 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목격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신고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13조 별지 11호서식)
- 아.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1인의 신고포상의 지급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이내로 제한하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접수및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 및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 소(변경)사유: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부천시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부천시장 귀하

—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부 천 시 장 귀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	납부장소
	원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 까지 ~	납부장소
	원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p>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	납부장소	
	원		지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p>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천시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 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 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p>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 천 시 장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천시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